

## 2026년 K-HERO 육성·지원사업 재공고

글로벌 기업부설연구소 육성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성장 지원을 위한 2026년 K-HERO 육성·지원사업(내역②. 기업 R&D역량강화 지원 2.0)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19일

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 경 훈  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구 자 균

### 1. 사업목적

- 국가전략기술분야 우수R&D역량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발굴·중점 지원하여 미래신산업 창출 및 글로벌 시장 선도가 가능한 글로벌 최우수연구소(K-HERO\*)로의 육성·지원
  - \* K-HERO : Korea-Highest Excellence R&D Organization
- 기업부설연구소 R&D역량별 맞춤형 집중 지원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성장 도모 및 기술경쟁력 제고

※ 본 공고는 1차 공고(과기정통부 공고 제2026-0149호) 접수 결과 중, 과제경쟁률이 1:1이하인 과제의 재공고로, 동 과제(내역②-내내역① 또는 내역②-내내역②)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\*은 기한 내 신청 필수

\* 1차 공고(2.13~3.16) 신청기관의 경우, 기 제출 서류로 접수 인정되며,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 공고 기간내 재제출

## 2. 지원분야

-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\* 50대 중점기술 및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관련 전·후방 산업 기술·제품 개발

\* (12대 국가전략기술) △반도체·디스플레이, △이차전지, △첨단 모빌리티, △차세대 원자력, △첨단바이오, △우주항공·배양, △수소, △사이버보안, △인공지능, △차세대 통신, △첨단로봇·제조, △양자

※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및 50대 중점기술 관련 상세자료는 사업공고 첨부자료 ([별첨]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및 50대 중점기술) 참고

## 3.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
- 지원대상

- 내역②(기업 R&D역량강화 지원 2.0) :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 중, 「R&D 역량진단시스템(R)」에 따라 3개년도 R&D역량 진단('22~'24)\* 결과가  $\frac{\text{내내역① 2그룹}(\text{역량상위 } 20\% < R \leq 40\%)}{\text{내내역② 3그룹}(\text{역량상위 } 40\% < R \leq 60\%)}$ 으로 지속성장한 기업부설연구소

※ 3개년 역량진단결과 지속성장하여 2그룹/3그룹에 도달하였거나, 2그룹/3그룹 내에서 지속적으로 역량(상위 %)을 제고해 온 기업부설연구소

### ○ (지원가능 예시)

- '24년 역량진단 전까지 역량 상위 60% 이내에 속하지 않았으나, 지속 성장하여 '24년 역량진단 결과 2,3그룹에 속한 기업부설연구소

\* (예시) ('22년)상위90% → ('23년)상위 67% → ('24년)상위 58% 내내역② 해당  
( '22년)상위77% → ('23년)상위 58% → ('24년)상위 24% 내내역① 해당

- '22년~'24년 역량진단결과 2, 3그룹(역량 상위20% < R ≤ 60%) 내에서 지속적으로 역량 성장을 제고해온 기업부설연구소

\* (예시) ('22년)상위58% → ('23년)상위 44% → ('24년)상위 42% 내내역② 해당  
( '22년)상위35% → ('23년)상위 33% → ('24년)상위 26% 내내역① 해당

### ○ (지원불가 예시)

- '22년~'24년 역량진단결과 중 R&D역량이 저하된 연도가 존재하는 기업부설연구소

\* (예시) ('22년)상위57% → ('23년)상위 33% → ('24년)상위 44%

\* (예시) ('22년)상위48% → ('23년)상위 50% → ('24년)상위 47%

### [ 참고 1 ] 기업부설연구소 R&D 역량진단시스템 개요

- **(개발배경)** R&D 역량을 진단함으로써 그 수준에 따라 수준별 역량강화 정책과 지원제도를 설계하고 기업은 R&D 전략수립에 활용
- **(진단방법)** 기업 R&D 역량지표를 정의하고 **업종 및 규모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**
- **(평가지표)** 4개 영역(R&D자원, 혁신활동, 혁신산출, 혁신성과)의 **26개의 평가지표**  
 ※ 가점지표 4개(+5)를 포함하여 총 105점 만점  
 ※ 평가지표: R&D 투자규모, R&D 집약도, 연구원 수, 연구기자재 수, 연구소 업력, 고급 연구인력 비중, 교육훈련비 비중, 신기술·신제품 인증 실적 등

#### [기업부설연구소 R&D 역량 진단방법]

기업부설연구소/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(<https://www.rnd.or.kr/>)에서  
 기관로그인 후 자사의 R&D역량(상위%) 확인 가능

\* <역량진단 - 역량진단결과>에서 기업 공동인증서 또는 인정번호로 로그인 후,  
 [R&D역량 진단결과] 메뉴에서 확인

### [ 참고 2 ] 기업부설연구소 역량별 지원대상 사업구분

구 분	연구역량	지원가능 사업
기업부설 연구소	상위 20% < R&D역량진단결과(R) ≤ 40%	<b>내역사업②[내내역①]</b> (기업 R&D역량강화 지원 2.0) [우수기업부설연구소 육성]
	상위 40% < R&D역량진단결과(R) ≤ 60%	<b>내역사업②[내내역②]</b> [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]

○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

- 내역②(기업 R&D역량강화 지원 2.0) / 내내역①(우수기업부설연구소 육성)

구분 (내역사업명)	신청자격 및 지원내용	지원규모/기간 (과제당 지원금)
	상세내용	
<b>내역②</b> (기업 R&D역량 강화 지원 2.0)  <b>[내내역①]</b> [우수기업부설연구소 육성]	<p>■ (지원대상) 「R&amp;D 역량진단시스템(R)」에 따라 3개년도 R&amp;D역량진단('22~'24)결과 2그룹연구소*로 지속성장한 기업부설연구소</p> <p>* R&amp;D역량상위 20% &lt; R ≤ 40%</p>	<p>[1단계 : 사전기획]</p> <p>· 4개 과제 / 3개월 (과제당 0.3억원)</p>
	<p>■ (지원내용) 기업부설연구소가 공공연구성과를 이전받 은(또는 이전받을) 공공연구기관(대학출연(연) 등)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관련 신 제품(기술) 개발* 지원</p> <p>※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 제품에 필요한 기술/공정 최적화 및 추가기술 확보, 인증/표준화, 시범 생산 등 지원</p>	
	<p>■ (신청방식) 공공연구기관(대학출연(연) 등)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</p> <p>※ 연구기관(대학출연(연) 등)과 컨소시엄 구성 시,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R&amp;D성과물(특허, 노하우 등)을 기술 이전 완료하였거나 또는 기술이전 예정이어야 하며,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이어야 함</p> <p>※ 최소 2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수 (기업부설연구소+연구기관(대학출연(연) 등))</p>	<p>[2단계 : 사업화R&amp;D]</p> <p>· 2개 과제 / 2.5년 (과제당 4억원 이내/연)</p> <p>※ 사전기획과제(4개) 중 기획결과 우수과제(2개) 선발하여 사업화 R&amp;D 지원</p>

- 내역②(기업 R&D역량강화 지원 2.0) / 내내역②(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)

구분 (내역사업명)	신청자격 및 지원내용	지원규모/기간 (과제당 지원금)
	상세내용	
<p><b>내역②</b> (기업 R&amp;D역량 강화 지원 2.0)</p> <p><b>[내내역②]</b> [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]</p>	<p>■ (지원대상) 「R&amp;D 역량진단시스템(R)」에 따라 3개년도 R&amp;D역량진단('22~'24)결과 3그룹연구소*로 지속성장한 기업부설연구소</p> <p>* R&amp;D역량상위 40% &lt; R ≤ 60%</p>	<p>· 2개 과제 / 1.75년 (과제당 3억원 이내/연)</p>
	<p>■ (지원내용) 기업부설연구소가 공공연구성과를 이전받은(또는 이전받을) 공공연구기관(대학출연(연) 등)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관련 주력 제품(기술) 고도화* 지원</p> <p>※ 기존 주력제품의 성능개선 및 공정 개량을 위한 사업화R&amp;D(이전 기술 최적화, 성능/공정 최적화 등) 지원</p>	
	<p>■ (신청방식) 공공연구기관(대학·출연(연) 등)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</p> <p>※ 연구기관(대학출연(연) 등)과 컨소시엄 구성 시,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R&amp;D성과물(특허, 노하우 등)을 기술 이전 완료하였거나 또는 기술이전 예정이어야 하며,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이어야 함</p> <p>※ 최소 2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수 (기업부설연구소+연구기관(대학·출연(연)))</p>	

#### 4. 사업 세부내용

<b>[내역2]</b>	<b>기업 R&amp;D역량강화 지원 2.0</b> <b>(내내역1.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육성)</b>
--------------	---

○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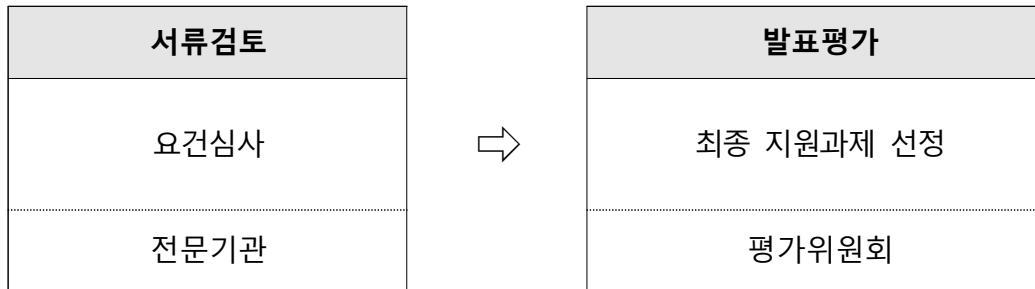
- (목적) R&D 역량진단결과 2그룹(도약형)으로 성장한 기업부설연구소의 혁신적 신제품(기술) 기획·개발을 지원하여 우수기업부설연구소로의 성장 지원
- (지원내용) 기업부설연구소가 공공연구성과를 이전한(또는 이전할) 공공연구기관(대학·출연(연) 등)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신제품(기술) 개발 지원
  - ※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/공정 최적화 및 추가기술 확보, 인증/표준화, 시범 생산 등
- (신청대상) 기업부설연구소와 대학·출연(연)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
  - (주관연구개발기관)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예정인 기업부설연구소로서, 3개년('22~'24) 역량진단결과 2그룹(도약형 연구소)으로 지속성장한 기업부설연구소(상위 20% < R&D역량진단 결과 ≤ 40%)
  - (공동연구개발기관) 주관기관에 공공기술을 이전하거나 또는 예정인 공공연구기관(대학, 출연(연) 등)
    - ※ 신청대상 세부요건은 [3.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] 참고
- (절차) ① 컨소시엄 구성(기업+대학·출연(연)) → ② 사전기획 지원(3개월, 2배수) → ③ 후속 지원과제 선정\* → ④ 후속 R&D지원(2.5년)
  - \* 제안 기술(제품)의 우수성, 사업성, 기존 기술(제품)과의 차별성 등을 바탕으로 후속 R&D지원과제 선정
- (지원규모)

구분	선정과제수	정부출연 / 민간부담비율	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
(1단계) 사전기획	4개	100% / 0%	3개월, 30백만원
(2단계) 후속R&D	2개	75% / 25%*	2.5년, 4억원 이내/연

※ 사전기획(1단계) 과제 중 결과평가 우수과제(상위50%)에 대해 후속R&D(2단계) 지원

※ 중견기업은 정부출연비율 70%, 민간부담비율 30% 적용

○ 선정절차



○ 평가기준

- [사전기획단계 발표평가 지표 및 배점]

구분(배점)	평가항목	상세 평가지표
신제품(기술)의 우수성(30)	기술의 혁신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안 기술의 혁신성, 차별성</li> </ul>
	기술의 완성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술의 현재 수준, 완성도</li> <li>- 제품/서비스 적용 가능성</li> </ul>
신제품(기술)의 사업성(30)	제품화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</li> </ul>
	사업화 추진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참여주체(대학·출연(연), 기업)의 사업추진의지 및 역량</li> <li>연구인력/장비 등 확보 계획</li> </ul>
참여주체 역량(20)	시장개발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술사업화 가능성, 시장진입 가능성,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 가능성</li> <li>BM 개발 수준 및 시장개발 계획</li> </ul>
	사업추진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참여자들의 기술개발, 사업화 추진 전문성</li> <li>- 기술개발 역량, 기술사업화 역량 등</li> </ul>
컨소시엄 활동계획 및 내용(20)	사업목표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명확한 사업목표 수립의 적정성</li> </ul>
	사업추진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단계별 사업내용의 적정성</li> </ul>
	실현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목표달성 및 기술사업화의 연계성</li> </ul>

- [후속R&D단계 선정평가 지표 및 배점]

구 분	평가지표	평가요소
컨소시엄 역량 (15점)	연구책임자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책임자 역량</li> </ul>
	개발역량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화R&amp;D 단계에서 추진주체별 의지</li> <li>추진주체의 적절성 및 역량</li> <li>참여기관간의 역할분담의 적정성</li> </ul>
	인프라 보유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참여주체별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</li> </ul>
기술개발계획 (30점)	신제품개발의 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술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 측정가능성</li> <li>추가기술 도출, 기술현황, 핵심기술 분석, 핵심 기술 개발 가능성, 외부 기술 확보 가능성(국내외 주요 선행특허 등)</li> </ul>
	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술개발 로드맵의 구체성</li> <li>기술개발의 구체성 및 타당성</li> <li>기술개발사업화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</li> </ul>
상용화 계획 (30점)	상용화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(시장 존재여부, 해외시장 분석여부 등)</li> </ul>
	상용화 전략의 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발기술의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별 차별화 마케팅 전략 (수출확대 전략 포함)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</li> </ul>
	상용화 의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용화를 위한 추가투자계획의 구체성 (기업자체 추가투자, 외부 조달 계획 등)</li> </ul>
파급효과 (15점)	협력지속 창출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 완료 후 구성원간(컨소시엄 내) 지속가능한 공동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</li> </ul>
	기업/산업발전 기여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관련 기업의 매출/수출/ 고용 창출 가능성</li> <li>관련 산업 선도 가능성</li> </ul>
운영계획 (10점)	사업비 배분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,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</li> </ul>

**[내역2]****기업 R&D역량강화 지원 2.0****(내내역2.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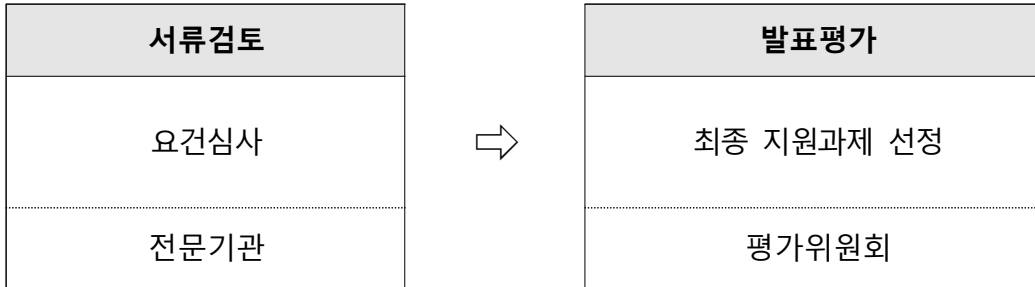
## ○ 사업개요

- (목적) R&D 역량진단결과 3그룹(성장형)으로 성장한 기업부설연구소가 보유한 제품(기술)의 고도화를 지원하여 상위그룹으로의 성장 지원
- (지원내용) 기업부설연구소가 공공연구성과를 이전한(또는 이전할) 공공연구기관(대학·출연(연) 등)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주력제품 고도화 개발 지원
  - ※ 기존 주력제품의 성능개선 및 공정 개량을 위한 사업화R&D(이전기술 최적화, 성능/공정 최적화 등)
- (신청대상) 기업부설연구소와 공공연구기관(대학·출연(연) 등)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
  - (주관연구개발기관)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예정인 기업부설연구소로서, 3개년('22~'24) 역량진단결과 3그룹(성장형연구소)으로 지속성장한 기업부설연구소(상위 40% < R&D역량진단 결과 ≤ 60%)
  - (공동연구개발기관) 주관기관에 공공기술을 이전하거나 또는 예정인 공공연구기관(대학, 출연(연) 등)
    - ※ 신청대상 세부요건은 [3.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] 참고
- (절차) ①컨소시엄 구성(기업+대학·출연(연)) → ②R&D지원(1.75년)
- (지원규모)

구분	선정과제수	정부출연 / 민간부담비율	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
내내역2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	2개	75% / 25%*	1.75년, 3억원 이내/연

※ 중견기업은 정부출연비율 70%, 민간부담비율 30% 적용

○ 선정절차



○ 평가기준

- [발표평가 지표 및 배점]

구분(배점)	평가항목	상세 평가지표
신제품(기술)의 우수성(30)	기술의 혁신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안 기술의 혁신성, 차별성</li> </ul>
	기술의 완성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술의 현재 수준, 완성도</li> <li>- 제품/서비스 적용 가능성</li> </ul>
신제품(기술)의 사업성(30)	제품화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</li> </ul>
	사업화 추진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참여주체(대학·출연(연), 기업)의 사업추진의지 및 역량</li> <li>연구인력/장비 등 확보 계획</li> </ul>
참여주체 역량(20)	시장개발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술사업화 가능성, 시장진입 가능성,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 가능성</li> <li>BM 개발 수준 및 시장개발 계획</li> </ul>
	사업추진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참여자들의 기술개발, 사업화 추진 전문성</li> <li>- 기술개발 역량, 기술사업화 역량 등</li> </ul>
컨소시엄 활동계획 및 내용(20)	사업목표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명확한 사업목표 수립의 적정성</li> </ul>
	사업추진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단계별 사업내용의 적정성</li> </ul>
	실현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목표달성 및 기술사업화의 연계성</li> </ul>

## 5. 공통 신청자격

- [공통]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
  -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사업공고 종료일(접수마감일)까지 기업부설연구소\*를 보유해야 함
    - ※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유효한 인정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
  -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은 과제수행기관과 동일해야 함. 단,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,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행기관인 경우,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인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함.
  - 「24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사전협의」에 따라, 사업공고 종료일(접수마감일)까지 산업부 사업 「우수기업연구소 육성(ATC+)」에 참여기관으로 연구수행 중인 기업부설연구소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·신청 불가
    - ※ 「우수기업연구소 육성(ATC+)」 사업 수행기간이 종료된 우수기업연구소는 본 사업 참여가능
  - 산업통상자원부 ‘수출지향형 글로벌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(GATC)’에 선정된 경우 본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능

## 6. 평가 우대 기준

-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
  - 공고 마감일 기준 3특 지역\*을 주소재지료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과제를 신청한 경우(1점)
    - ※ 3특 지역: 강원특별자치도, 전북특별자치도, 제주특별자치도

## 7. 지원제외 사항

-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
  - ※ 이 외 [붙임 2.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] 상 검토내용에 해당되는 경우

검토항목	기준
신청자격 및 공고적합성	• 주관기관 등이 신청제외 및 평가·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기 개발/기 지원	• 신청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 개발/기 지원 대상인지 여부 - 기 생산·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 해당 여부

의무사항 불이행	• 주관·공동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납부 등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참여제한 여부	• 주관·공동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대상인지 여부
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	• 주관·공동기관, 대표자 등이 부도, 휴·폐업, 채무불이행, 부채비율 1,000%이상,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지 여부

## 8. 신청기간 및 방법

- 공고기간 : 2026년 3월 19일(목) ~ 4월 6일(월) 18:00까지
- 신청기간 : 2026년 3월 19일(목) ~ 4월 6일(월) 18:00까지(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
- 신청방법 : 홈페이지(www.koita.or.kr) 사업공고 또는 공지사향에서 [붙임]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다음 제출처로 송부  
- koita235@naver.com 및 kmh@koita.or.kr

### ○ 제출서류

순서	구분	제출서류명	제출부수	제출기관	비고
1	공통	신청공문 (주관기관장 명의)	1부 (PDF본)	주관기관	기관 자율양식
2		사업자등록증 (주관/공동)	1부 (PDF본)	주관기관 대표제출	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
3		수행기관(주관/공동)의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(직전년도로부터 최근 2년 결산자료)	1부 (PDF본)	주관기관 대표제출	- 표지(회계사 직인 포함), 재무상태표 (표준대차대조표), 손익계산서(표준손 익계산서) *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 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※ 비영리기관 및 상장사(거래소, 코스닥)는 제출 불필요
4		과제 중복성 검토 결과	1부 (PDF본)	주관기관 대표제출	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( <a href="https://www.ntis.go.kr">https://www.ntis.go.kr</a> )에서 제안과제에 대해 차별성검토 실시한 결과 출력물제출 * 차별성검토 기준 40점으로 설정하 여 조회한 결과가 "차별성(유사)과 제 수" "0건"으로 나와야 함
5		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	1부 (PDF본)	주관기관 대표제출	[붙임 1] 파일 작성
6	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1부 (PDF본)	주관기관 대표제출	[붙임 2] 파일 작성
7	내역②- 내내역① (우수기업 부설연구소 육성)	연구개발과제계획서	1부 (PDF본)	주관기관 대표제출	[붙임 3] 파일 작성
8		기술이전계약서*	1부 (PDF본)		주관기관-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기술이전계약서
9		최근 3개년도(22~24) 역량진단 결과값	1부 (PDF본)		<a href="https://www.rnd.or.kr">https://www.rnd.or.kr</a> 에서 3개년도 R &D 역량진단결과 화면 캡처 후 제출
10	내역②- 내내역② (기업부설연구 소 보유역량 고도화)	연구개발과제계획서	1부 (PDF본)	주관기관 대표제출	[붙임 4] 파일 작성
11		기술이전계약서*	1부 (PDF본)		주관기관-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기술 이전계약서
12		최근 3개년도(22~24) 역량진단 결과값	1부 (PDF본)		<a href="https://www.rnd.or.kr">https://www.rnd.or.kr</a> 에서 3개년도 R &D 역량진단결과 화면 캡처 후 제출

\* 기술이전 예정인 경우, 이전에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(이전 협약서 등)으로 대체하여 제출

## 8. 기술료 징수대상 및 상한

- (기술료 징수 대상) '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'은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,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, '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'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

연구개발기관유형	중소기업	중견기업	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
기술료 상한	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%	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%	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%

### - 기술료 산정기준

연구개발기관유형	중소기업	중견기업	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
①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	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%	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%	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%
② 직접 실시한 경우	(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)의 5%	(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)의 10%	(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)의 20%

※ '기술기여도'는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, 기여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

## 9.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신용조회 및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」, 「과학기술기본법」 등을 적용

## 10. 문의처

-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지원팀(연락처: 02-3460-9127)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(연락처: 044-202-4737)

※ 신청·접수여부, 서류 작성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문의바랍니다.